

공증제도 도입 100년! 새로운 미래 도약 발판으로

김 진 환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

근대적 공증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벌써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1912년 재판소 서기에 의한 공증 업무가 처음 도입되면서, 1913년 법률전문가에 의한 공증인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고, 1961년 9월 현재의 공증인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년의 연륜속에서 우리의 공증제도는 수많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 왔다.

전임 공증인 제도와 아울러 라틴계 공증제도 국가 중 유일한 변호사 겸업 공증제도가 도입되었고, 어음·수표에 대한 공증과 법인 등기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의사록 등에 대한 인증 시행 등은 세계적으로도 획기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전자공증제도가 도입되었고, 문서내용의 진실성까지 담보하도록 하기 위한 선서인증부터 자기신탁선언과 후견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도입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증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을 다지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우리나라는 역사의 단절과 부침을 겪은 나라이지만, 100년의 역사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눈부신 압축성장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사법제도로서의 공증제도가 아직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을 보면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1년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628만 7,823건에 이르고, 이 중 개인 간 소송이 증가 되는 민사사건은 69.2%에 해당하는 4,351,411건이 접수, 전체 인구 수 대비 약 100명당 8명이 법적 분쟁으로 인한 소송(단, 2011년도 민사본안사건은 1,000명당 19건의 비율)에 연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사고소는 피고소 인원 대비 67배나 일본보다 많고,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 인원은 171배가 된다. 민사사건도 사건 기준으로 2배, 인구 10만 명당 사건 수는 5배나 많은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만일 약속이나 거래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다음 나라가 세운 중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설령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재판절차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확보하여 자기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해주는 우리 공증의 현실은, 2001년도 110만 건이던 공정증서 작성 건수가 지난해 2012년도에는 70만 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사서증서 인증 건수도 100만 건에서 86만 건으로 감소하고, 특히 정관 인증은 회사설립의 간편화라는 취지의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2001년도 6만 건에 달하던 처리건수가 5천 5백여 건으로 축소되었다. 법률문화의 확산으로 공증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높아졌을 지라도 실제 개인 간 거래에 있어 공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인식은 기대하는 만큼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주는 대목이다.

대한공증인협회에서도 생활 속의 공증제도 확산을 위하여 법무부와 공동으로 2007년부터 공증주간 행사를 시행하고 있고, 관계기관의 호응속에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지만, 아직 기대한 만큼의 폭넓은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예방사법분야인 공증제도를 보다 넓은 영역에서 효율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부

동산등기원인행위 공증에서부터 신분법,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법원의 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넓혀주고, 공증행위가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에 보다 유효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절실해 지고 있다.

사회 각 분야가 국경을 허물고 글로벌되고 있는 추세에 발 맞추어 우리 공증도 세계화로 외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아포스티유 협약 등으로 공증인으로부터 받은 공증 문서는 협약가입국의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만큼, 국제공증인협회(UINL)와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회원국 활동을 통한 대외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 선진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결코 우물안 개구리여서는 안된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가면서 우리 공증제도 위상 강화에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가 2010년 국제공증인협회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고, 2012년 11월 국제공증인협회 아시아지역위원회(CAAs)의 제2차 정기회의를 유치, 롯데호텔에서 성대한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재하고 본인이 아시아지역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된 것은 한국 공증제도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된 결과라고 자평한다.

이제 사회구축의 견인차로서 공증제도를 더욱 확산하고 정착시켜야할 시점이다. 지금의 시대는 아날로그도 디지털도 아닌 스마트 시대이다. 우리의 삶은 과거의 시대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미래를 정확히 예견하여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일이 그리 수월치는 않다. 어떠한 사회 분야나 제도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모습과 규범으로 변화 발전해 가야만 구성원 간 소통이 완성된다. 공증제도 또한 그런 시점의 소통과 변화가 필요하다.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교착되는 현대사회에서 이를 규율하는 법을 제정하는 하드웨어적 행위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후 법률 적용의 기술적 행위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다. 하지만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스마트 시대에서의 법률문화는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사후의 법적 분쟁이 아닌 사전의 법적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모든 분야의 사회 구성원 간 생활 속 각종 거래에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사후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대폭 줄임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 이것이 곧 소송경제요,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창조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스마트는 똑똑하고 영리하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스마트 시대의 사람들은 일상에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하나 이익형량을 따져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제공해 주느냐의 가치평가로 행위를 선택하게 된다.

공증인과 촉탁인 모두 법률행위의 토대인 약속의 내용이 얼마나 진실된 행위인지, 실천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계산한다. 인터넷과 신문, 책 등을 통해 수많은 법률정보를 접해 온 촉탁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공증서류 작성만을 위하여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만은 않는다. 자신이 의뢰하는 공증이 적법절차에 따른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분명히 알고 싶어 하고, 더 나아가 거래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좀 더 손쉬운 분쟁해결의 솔루션은 없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반대로 공급자인 공증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요자인 촉탁인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촉탁인의 공증행위에 따른 법률정보와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관점의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최소비용을 통해 최대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만큼 공증실무에서 공증인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크다 할 것이다.

중국 송대 선종(禪宗)의 화두를 모은 공안집(公案集)인 ‘벽안록’의 한 구절에 ‘줄타 동시(啍啄同時)’란 말이 나온다. ‘줄타동기(啍啄同機)’라고도 하는 이 말은 알 속의 병

아리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동시에 껍질을 찢아야만 그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공중실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방사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와 공증인이 서로간 신뢰 속에 알을 깨기 위한 상호작용인 ‘줄탁’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나가야 하는 우리 공증제도의 신미래 지향점은 예방사법 문화의 형성이다. 그 바탕에는 ‘신뢰 구축’이라는 약속의 믿음이 필요하다. 신뢰와 약속의 믿음은 둘이 아닌 하나다. 신뢰가 있기에 약속을 믿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신뢰가 구축된다. 우리 공증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신뢰사회가 구축되도록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때이다. 그 시작이 곧 새로운 가치의 신 미래를 창조하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고, 그 시작점은 바로 지금이다. 